

[부록 양식]<개정 1990.8.21., 1993.4.9>

[부록 제1호]

문 서 양 식

(장 부 관 계)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1	압류 직무부 표지
2	가압류 직무부 표지
3	압 류 직무부 내용 가압류
4-1	징수명령부 표지
4-2	위 내용
5-1	부동산 현황조사부 표지
5-2	위 내용
6-1	송달부 표지
6-2	위 내용

7-1	집달관수수료수납부 표지
7-2	위 내용
8-1	부책보존부 표지
8-2	위 내용
9-1	사건기록보존부 표지
9-2	위 내용
10-1	기록출입부 표지
10-2	위 내용
11-1	문서수발부 표지
11-2	위 내용
12-1	열람 및 등·초본 접수장 표지
12-2	위 내용

(1)

년도 압 류 직 무 부 법원집달관사무소 -----

(2)

년도

가 압 류 직 무 부

법원집달관사무소

(3)

진행번호					직무
접수월일		월 일	월 일	월 일	
채권자					
채무자					
채무명의					
채권액 또는 목적물					
집행월일					부
종결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유				
예납금액					부
수	위임수수료				

입 금 액	여 비				법 원 집 달 관 사 무 소
	경 매 수 수 료				
	숙 박 료				
	체 당 금				
	기 타				
	계				
잔 액					
환 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록 보 존		년 질	년 질	년 질	
비 고					
담 당 집 달 관					
위 임 자 확 인 (주 민 등 록 번 호)					

(4-1)

년도

징수명령부

법원집달관사무소

징수명령부

법원집달관사무소

(4-2)

진행번호							징수명령부
접수월일				월일	월일	월일	
징수번호							
소속청 및 검사				지검 지청 검사	지검 지청 검사	지검 지청 검사	
채무자							
채무명의 내용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기타						
집행일자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수수료	수수료				법원 집달관
	체당금				
	계				
수수료영수일자					사무소
종결	일자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사유				
담당집달관					
보존		년질	년질	년질	
비고					

(5-1)

(5-2)

접 수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동 산 현 황 조 사 부
사 건 번 호					
채 권 자					
소 유 자					
사 건 종 별		현황,평가	현황,평가	현황,평가	
채 권 액					
직 무 의 장 소 (거 리)					
결 과					
보 고	보 고 기 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법 원 집 달 관 사 무 소
	중 간 보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최 종 보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비 용	현 황 수수료				
	평 가 수수료				
	여 비				
	기 타 비 용				
	계				
	영 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월			월				월		
	일			일				일		
	월			월				월		
	일			일				일		
	월			월				월		
	일			일				일		
	월			월				월		
	일			일				일		

(7-1)

년도

집 달 관 수 수 료 수 납 부

법원집달관사무소

(7-2)

규격 가로 : 26cm

세로 : 36cm

수 납		사건번호	사 건 명	예 납 자	수 납 액	환 부 액	비 고
월	일						

1. 매일 일계와 누계를 하고 월말에 월계와 누계를 하여야 한다.
2. 일계, 월계산의 잔액표시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년도 부 책 보 존 부 법원집달관사무소 -----	
--	--

[illegible]

법원집달관사무소

(10-2)

【기 록 출 입 부 법 원 집 달 관 사 무 소】									
기 록 대 출 연월일	사 건 번 호	관 련 사 건 번 호	담 당 집달관 성 명	기 록		기 록		보 존 확인자 성명인	비고
				대 출 사 유	수령자 성명인	반 환 연월일	수령자 성명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년			

월 일						월 일			
년						년			
월 일						월 일			
년						년			
월 일						월 일			
년						년			
월 일						월 일			
년						년			
월 일						월 일			

(11-1)

년도

문 서 수 발 부

법원집달관사무소

(11-2)

진행번호	수발월일	문서번호	건명	수신자	발신자	비고(첨부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12-1)

년도
열람 및 등·초본 접수장

[illegible][illegible]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부록 제2호] 문 서 양 식 (사 건 관 계)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1-1	부동산 강제(임의)경매조서

1-2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목록
2	부동산 강제(임의)경매불능조서
3	부동산 집행조서
4-1 4-2	동산압류조서 압류(경매)목록
5	동산경매공고
6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7	동산경매 연기조서
8	유체동산 경매조서
9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조서
10-1 10-2 10-3	부동산 현황 조사보고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임대차관계 조사서
11	고 시
12	강제집행신청서
13	송달증서
14-1	집행사건 기록표지(표면)
14-2	위(이면)
15	영수증
16	미제사건 보고서

법 원

부동산 강제(임의)경매조서

사건9타경

채 권 자

채 무 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19 . . . : . ,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10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5. 최고가 매수신고인 로부터 원, 차순위매수 신고인 로부터 원을 보증금으로 각 징수 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6. 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그 성명과 최고가 격을 호창한 후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를 차순위매수신 고인으로 정하여 성명과 차순위매수가격을 호창하였다.
7. 공유자 가 별지 목록과 같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므로 원을 보증금으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동일 : 에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였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 들려준 즉 승인 열람케 한

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인)

[illegible]

(2-1)

법 원

부동산강제(임의)경매불능조서
사건9타경 채 권 자 채 무 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19 . . . : ,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10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 들려준 즉 승인 열람케 한 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19 . . .

지 방 법 원
집 달 관 (인)

(2-2)

○ ○ 법 원

입 찰 조 서

사건 9타경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번 물건)

입찰기일 19 . . : ,입찰 및 개찰장소 법원 제 호 입찰장
(법정)

1.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하였다.
2.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하였다.
3. 입찰가격의 1/10(또는 /)의 보증을 세우지 아니하면 입찰자가 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동일 : 에 입찰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였다.
5. 동일 : 에 입찰을 마감하고, : 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별첨 입찰표 번 기재 입찰자는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주사 를
참여하게 하고)입찰표를 개봉하여 낭독하였다.
6. 입찰자 외 명이 별첨 입찰표 기재와 같이 입찰하였다.
7. 추가입찰(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차순위입찰신고인)를 정하였다. 추가입찰(추첨)의 자세한 경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
8. 최고가입찰자 및 대리인(대표자)의 성명, 그 입찰가격, 보증금액은 별첨 입찰표 1번 기재와 같고, 그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였다.

9. 차순위입찰신고인 및 대리인(대표자)의 성명, 그 입찰가격, 보증금액은 별첨 입찰표 번 기재와 같고, 그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였다.
10.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다.
공유자 및 대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매수신고가격, 보증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11. 최고가입찰자·차순위입찰신고인·공유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12. 동일 : 에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였다.
첨부서류 : 입찰표 및 추가입찰표 통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 들려준(열람하게 한)즉 승인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19 . . .

○ ○ 법 원 집 달 관 (인)

최고가입찰자 (인)

차순위입찰신고인 (인)

- 주 : 1.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여러개의 물건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 해당물건의 물건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3. 입찰표 및 추가입찰표에 순차 일련번호를 붙여 첨부하고, 이를 인용할 때에는 그 입찰표의 번호를 기재한다. 공동입찰허가원, 대리인(대표자)자격증명서등은 해당입찰표 뒤에 첨부한다.
 4. 시각은 시분까지 정확히 기재한다.(예시 14:25)

(2-3)

○○법원

입찰불능조서

사 건 9 타경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번 물건)

입찰기일 19 . . ∴ ,입찰 및 개찰장소 법원 제 호 입찰장(법정)

1.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하였다.
2.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하였다.
3. 입찰가격의 1/10(또는 /)의 보증을 세우지 아니하면 입찰자가 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동일 : 에 입찰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였다.
5. 동일 : 에 입찰을 마감하고, : 에 입찰자의 면전에서(별첨 입찰표번 기재 입찰자는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주사를 참여하게 하고) 입찰표를 개봉하여 낭독하였다.
6. 입찰자 외 명이 별첨 입찰표 기재와 같이 입찰하였다.
7. 적법한 입찰이 없었다.

사유 : (예시)2번 물건-입찰자가 없음. 4번물건-채무자만 입찰 5번 물건-최저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만으로 입찰 10번 물건-허가없이 공동입찰등.

8. 동일 : 에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였다.

첨부서류:입찰표 및 추가입찰표 통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 들려준(열람하게 한)즉 승인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19 . . .

○ ○ 법 원 집 달 관 (인)

- 주 : 1.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여러개의 물건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 해당물건의 물건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3. 입찰표 및 추가입찰표에 순차 일련번호를 붙여 첨부하고, 이를 인용할 때
에는 그 입찰표의 번호를 기재한다. 공동입찰허가원, 대리인 (대
표자)자격증명서등은 해당입찰표 뒤에 첨부한다.
4. 시각은 시분까지 정확히 기재한다.(예시 14:25)

(3)

법 원

부 동 산 집 행 조 서

9분 (부)

채 권 자

채 무 자

직무수행장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9 집행력 있는 판결, 화해,
인낙,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위 직무수행
장소에서 채무자 을 만나서 위 정본을 제시하고 그 정본
주문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 인도 집행의 뜻을 알리고 임의로
이행할 것을 고지하였는 바, 이에 불응하므로 동인과 채권자를 참
여시키고 위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달관이
이를 점유하여 채권자 에게 인도하였다.

이 절차는 19 . . . : , 시작하여 동일 : , 에 종료하
였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 들려준 즉 승인

열람케 한			
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19 . . .			
지 방 법 원			
집	달	관	(인)
	채	권	자 (인)
	채	무	자 (인)
	참	여	자 (인)
	참	여	자 (인)

(4-1)

법 원			
동 산 압 류 조 서			
9분 (부)			
채 권 자			
채 무 자			
직무수행장소			
		청구금액	
	금	집행비용	내역
	금		
합계금			
위 당사자간 법원9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위 직무수행장소에서 채무자 를 만나 임의			
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동인은 이에 불응하므로 위 청구금액			
과 강제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를 참여시키고			
별지목록의 물건을 압류하였다.			

압류물건은 집달관이 이를 점유하고 표시를 하여 그 압류물임을 명백히 하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보관인에게 이 압류물의 점유는 집달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압류물은 19 . . . : ,에 위 직무수행장소에서 경매(競賣)한다.

이 절차는 19 . . . : 에 시작하여 동일 :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 들려준 즉 승
열람케 한
인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19
지 방 법 원
집 달 관 (인)

채 권 자 (인)
채 무 자 (인)
참 여 자 (인)
참 여 자 (인)

압 류 (경 매) 목 록

(4-2)

번 호	압류 경매 물품	수 량	평가액	경 매 가 격 압류품 소재	경 락 인 봉인표시	비 고

(5)

동 산 경 매 공 고						
다음 물품은 서기	년	월	일	시	분	시
(도) 구(군)	동(면)	번지	집에서 경매(競賣)합니다.			
19 . . . 지 방 법 원 집 달 관 경 매 품 목 외 점 외 점 끝						

(6)

법 원	
9본 (부)	동 산 경 매 기 일 통 지 서
	귀하
채 권 자	
주 소	
채 무 자	
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9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19 . . .
. . .압류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매(競賣)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경매일시 :

경매장소 :

19 . . .
지 방 법 원
집 달 관

(7)

법 원

동 산 경 매 연 기 조 서

9본 (부)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간의 법원9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압류를 한
물건에 대하여 19 . . . 이 경매기일이었으나 채권자로부터 월 일까
지 변제의 유예를 하겠다는 경매연기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경매기일을 19
. . . : ,로 변경하였다.

이 조서는 동일 :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 들려준
열람케 한
즉 승인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19 . . .
지 방 법 원

집 달 관 (인)

채 권 자 (인)

채 무 자 (인)

(8)

유 체 동 산 경 매 조 서

9본 (부)

채권자

채무자

직무수행장소

청구금액

금

금

합계금

위 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지하고 별지목록 기재의 압류물건을 다음과 같이 경매하였다.

임시대수신고인에게는 다음 사항을 고지하였다.

1. 경락은 최고매수가격을 3회 호창(呼唱)한 후에 한다.
2.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한다.
3. 경락인은 경매기일 종료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경락물의 인도를 구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그 물건을 경매한다.
4. 전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락인은 재차 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며
또 그 경매대가가 최초의 경락대가보다 저가인 때는 부족액을 부담할 것이며
이보다 고가(高價)일 때에는 그 잉여액(剩餘額)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공유유체동산에 대하여 우선 매수신고할 수 있다.
6. 이건 압류물건은 일괄하여 경매한다.

위와 같이 고지를 한 후 경매를 최고하였다.

위 경매물의 가격은 별지목록에 기재한 최고가격의 신고가 있는 후 이를 3회 호창하였으나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므로(있으나 채무자의

배우자로부터 우선 매수신고가 있으므로)동인을 경락인으로 정하였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경락물을 인도하였다.

경락매득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매득금액	금	원					
금	원	배우자		에게	교부		
집행비용	금	원	내역	경매수수료	금	원	
				노 무 비	금	원	
				일	당	금	원
				감정수수료	금	원	

배당할 금액	금	원					
	금	원	채무자		에게	교부	
	금	원	배당요구자		에게	교부	
잔여금		원	채무자에게	교부			

채무자는 위와 같이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그 영수증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절차는 19 . . . : ,에 시작하여 동일 :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들려준 즉 승인하고 기명
열람케 한

날인하였다.

19

지방법원

집달관 (인)

채권자 (인)

채무자 (인)

경락인 (인)

참여자 (인)

(9)

유 체 동 산 가 압 류 집 행 조 서			
9가	(부)		
채권자			
채무자			
직무수행장소			
	청구금액		
금			
금			
	집행비용	내역	
금			
합계 금			
위 당사자간 법원 9 의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한 채권자 위임에 의하여 위 직무수행장소에서 채무자 를 만 나 위 가압류결정정본을 제시하고 가압류할 뜻을 고지한 후 동인과 채 권자 를 참여시키고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가압류하였 다. 위 가압류 물건은 집달관이 점유하고 표시를 하여 가압류물임을 명백 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가압류물건의 점유는 집달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가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 절차는 19 . . . : ,에 시작하여 동일 : ,에 종료 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고 집행참여자에게 읽어들여준 즉 승인하			

열람케 한

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19 . . .

지 방 법 원

집달관 (인)

채권자 (인)

채무자 (인)

참여자 (인)

참여자 (인)

(10-1)

법 원

부 동 산 현 황 조 사 보 고 서

9 타경 법원 판 사 귀하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보고합
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2. 조사의 일시

3. 조사의 장소

4. 조사의 방법

첨부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2. 임대차 관계조사서

19 . . .

지 방 법 원

집 달 관

(인)

(10-2)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 (1)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 (2) 부동산의 내부구조 및 사용용도등(도면, 사진등 첨부)
- (3)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
 - (가)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 없음.
 - (나) 채무자(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목적물 전부에 대해 별지목록과 같이 임대차 있음.
 - (다) 별지목록과 같이 임대차 조사된 부분외에는 채무자(소유자)가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
 - (라) 기 타

(10-3)

임 대 차 관 계 조 사 서

- (1) 임차목적물
(2) 임 차 인
(3) 임 차 내 용
 (가) 보증금 원정 월세 원정
 (나) 전세금
 (다) 임대차기간 . . .부터 . . .까지
 (라) 기 타
(4) 주민등록 전입여부 및 그 일자
(5) 일자확정여부 및 그 일자

- (1) 임차목적물
(2) 임 차 인
(3) 임 차 내 용
 (가) 보증금 원정 월세 원정
 (나) 전세금
 (다) 임대차기간 . . .부터 . . .까지
 (라) 기 타
(4) 주민등록 전입여부 및 그 일자
(5) 일자확정여부 및 그 일자

(11)

법원	
고	시
19	가 호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별지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달관이 이를 보관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집달관의 허가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 . . 지 방 법 원 집 달 관	

(12)

법원 (표면)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채 권 자 성 명 주 소 대 리 인	법원 집달관 귀하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집행목적물 소재지	
채 무 명 의	
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청 구 금 액	원(내역은 이면과 같음)
위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19 채권자 (인) 대리인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3. 위임장 1통 4. 목적물 소재지 약도 1통	

청 구 금 액 계 산 서

(12)

(이면)

내 용	금 액
합 계	원

(13)

접 수 년 월 일			
	송 달 증 서		
송달부 진행 번호	제	호	부 과
송달을 받을 사람			
송 달 장 소	시	군	동 가 번지의 호

		도 구 로			
송 달 물					
받 송 한 사 람		법 원		주 사	
영 수 인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을 받을 사람 본인에게 주었다.				
2	송달을 받을 사람이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주었다.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송 달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시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19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집 달 관					

(14-1)

법 원

집 행 사 건 기 록				기 일
사 건 번 호		담당 집달관		.
사 건 명				.
관 련 사 건				.
채 권 자				.
대 리 인				.
채 무 자				.
보 관 인 등				.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종 결	일 자	년 월 일		
	결 과			
보 존	일 자	년 월 일 (질)		
	종 기	년		
법원		집달관사무소		

(14-2)

법 원

(이면)

기 록		납 입 자	

번 호								성 명									
월 일	내 역		예납액		수입액		잔 액		월 일	내 역		예납액		수입액		잔 액	
위 예납잔금 을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19 . . .																	
채 권 자																	

(15) 법 원

영 수 증				No.			
귀 하							
기 록 번 호		사 건 표 시		수수료 또는		비 고	

년	번 호		배당금	
계				

위 금액을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19 . . .

지 방 법 원
집 달 관

※ 1. 용지규격은 32절지
2. 2통(복사용)을 작성하여 1통은 위임자에게 교부할 것
3. No.는 발행번호를 기입할 것.

(16)

미 제 사 건 보 고 서

수신	지방법원		19 . . .		
구분	사건번호	사 건 명	당사자표시	수입년월일	미제사유
번호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수임후 3월이 경과되어도 사건처리를 완결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지 방 법 원

집 달 관

(인)